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47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등록 ·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감독·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로 하여금 작업중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스템에 작업중지 실시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보고 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산재예방 정책수립이나 감독,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안 제52조의 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의2(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등록·관리, 교육·정보 제공 및 등록 정보의 분석·활용 등을 위하여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u>보고하여야 한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업주의 입력·보고 절차,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①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와 ②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작업중지 제도의 현장 작동을 위하여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 다음과 같이 TBM(Tool Box Meeting, 안전점검회의)이나 현장 안전관리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신고하고, 안전보건관계자¹⁾등은 작업중지의 원인인 위험요

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 건설사 작업중지 관련 시스템 현황]

사업자	시스템 및 주요내용
삼성물산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S-TBM을 개발하여 신고된 위험 사항은 즉시 작업을 중지한 후, 2시간 이내에 확인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하는 2시간 이내 피드백 실시
현대건설	근로자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작업중지권, 안전수칙 위반,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제언하고, 작업열외권 및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대우건설	웹(web) 및 모바일(mobile)로 구동되는 안전보건시스템(SMARTy)을 자체 개발하여 근로자가 익명으로 위험요인 및 작업중지를 신고하고, 담당자 조치 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함
디엘이앤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깨동무 M 구축·운영
현대엔지니어링	자체개발한 애플리케이션 HEC 心 안전보건(핵심안전보건)을 활용하여 근로자 자기주도 작업중지권 발부 기능
포스코이앤씨	현장별 작업중지권 전용 애플리케이션 포근이 개발·운영 중
SK에코플랜트	전용 애플리케이션(안전에 진심)을 이용하여 위험요인 발생 즉시 작업중지권 사용하도록 함

(자료: 대한건설협회 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이러한 대기업과 같은 시스템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를 정책수립·감독·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국가가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바,

1)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을 말함

첫째, 대기업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은 작업중지 의무나 작업중지권 행사에 있어 비대면 방식을 취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등과 근로자 간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현장에서 작업중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반면, 개정안의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은 작업중지에 있어 안전보건관계자등과 근로자 간 의사전달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정부 보고 및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작업중지의 실효성 제고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둘째, 현실적으로 입력 의무자인 사업주의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뿐 아니라 이러한 부담은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이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앞서 언급된 주요 건설사 시스템과 유사하게 안전보건관계자등과 근로자 간 현장 내 신속한 위험요인 신고·공유와 위험정보·공정별 안전수칙의 전파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²⁾ 개발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보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의 자체 작업중지 건수만으로도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작업중지의 표준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정책 분석·활용의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

2) 건설안전패스

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등록·보고하도록 할 경우, 위험 현장 대응보다 보고절차가 우선되어 제도 본질이 훼손되고 작업중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근로자는 사업장의 작업중지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 신고 전화, 안전일터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